「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13. 2. 25. 개정 판 (시행 2013. 9. 1.) → 2014. 4. 14. 개정 판 (시행 2014. 3. 1.)

바뀜 3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205/compare?from=512&to=514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2:42:59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3조(업무) 센터는 교수의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법의 연구, 개발 및 지원 업무 2.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학습방법 연구, 개발 및 지원 업무 3. e-Learning 강좌의 제작 및 운영 4. 멀티미디어 교육매체 제작 지원 5. 교수방법개선을 위한 연구모임프로그램 지원 6.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7. 교수/학습관련 각종 워크숍 실시 8. 강의 컨설팅(촬영 및 분석)업무 9. 강의실 및 세미나실의 교육매체 장비의 관리 및 운영 10. 강의에 필요한 음향/영상 장비의 관리 및 대여 11.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전문개정 2013-02-02〉	**제3조(업무)** 센터는 교수의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법의 연구, 개발 및 지원 업무 2.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학습방법 연구, 개발 및 지원 업무 3. e-Learning 강좌의 제작 및 운영 4. 멀티미디어 교육매체 제작 지원 5. 글쓰기 지원 6. 교수방법개선을 위한 연구모임프로그램 지원 7.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8. 교수/학습관련 각종 워크숍 실시 9. 강의 컨설팅(촬영 및 분석)업무 10. 강의실 및 세미나실의 교육매체 장비의 관리 및 운영 11. 강의에 필요한 음향/영상 장비의 관리 및 대여 12.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개정 2014-04-14〉
제4조(조직) 센터에는 교수학습개발팀과 교육미디어지원팀을 두며, 센터장과 부장, 각 팀의 팀장과 팀원,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조교 또는 연구원을 둘 수 있다. ①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③ 각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팀원을 지휘, 감독한다. 〈전문개정 2013-02-25〉	**제4조(조직)** 센터에는 교수학습개발팀과 교육미디어지원팀을 두며, 센터장 및 팀장과 팀원을 두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구원 또는 조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04-14〉 ① 센터장은 센터를 지휘, 감독하며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한다. ②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개정 2014-04-14〉 ③ 각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제2조의 업무를 수행하고 소속팀원을 지휘, 감독한다. 〈전문개정 2013-02-25〉
제10조(운영세칙) ① e-Learning, 컴퓨터활용(MOS)의 운영등과 같이 필요한 경우 세부규정을 둘 수 있다. ②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2-25〉	**제10조(운영세칙)** ① 교수법, 학습법 e-Learning, 글쓰기, OCW(Open Course Ware)의 운영 등과 같이 필요한 경우 세부규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04-14〉 ② 기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수학습개발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02-25〉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업무) 센터는 교수의 교수역량을 강화하고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교수법의 연구, 개발 및 지원 업무
2. 학습자 중심의 교육환경 구축을 위한 학습방법 연구, 개발 및 지원 업무
3. e-Learning 강좌의 제작 및 운영
4. 멀티미디어 교육매체 제작 지원
5. 글쓰기 지원
6. 교수방법개선을 위한 연구모임프로그램 지원
7.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8. 교수/학습관련 각종 워크숍 실시
9. 강의 컨설팅(촬영 및 분석)업무
10. 강의실 및 세미나실의 교육매체 장비의 관리 및 운영
11. 강의에 필요한 음향/영상 장비의 관리 및 대여
12. 기타 센터의 목적에 부합되는 업무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팀장은 센터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운영을 관할하며 센터장 부재시 센터장의 업무를 대리 수행한다.

제10조제1항 중 "e-Learning, 컴퓨터활용(MOS)의 운영등과"를 "교수법, 학습법 e-Learning, 글쓰기, OCW(Open Course Ware)의 운영 등과"로 하고, "있다."를 "있다. 〈개정 2014-04-14〉"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